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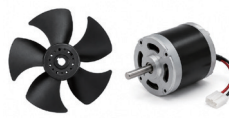
선풍기

I 사례 개요

- 사 례 번 호: NY N351782 (2025.08.27.)
- 쟁 점 사 항: 무역구제조치 적용 및 원산지 표시를 위한 원산지 판정
- 최종 수출국: 중국
- 최종 원산지: 태국



II 사실관계

용도	• 송풍 및 환기용		
재료		태국	• 팬 블레이드 • 모터
		중국	• 전원 코드 • 전면 및 후면 그릴 • 전기 부품 및 기타 부품
Sourcing 및 공정 흐름도	Sourcing ▾  태국  팬 블레이드 및 모터 생산 Manufacturing ▾  중국  STEP 1 팬 블레이드 및 모터 수입 STEP 2 기타 부품 생산 STEP 3 최종 조립 STEP 4 검사 및 포장 Export ▾  중국 최종 수출		
상세 공정		태국	• 원재료를 절단, 스탬핑 및 성형하여 팬 블레이드 생산 • 태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모터 생산
		중국	• 전원 코드, 전기 부품, 보호용 전면 및 후면 그릴 등 생산 • 태국산 부품과 중국산 부품을 최종 조립 • 검사 및 포장

III 판정 결과

《CBP의 판정》

- ⊙ 중국에서 수행되는 최종 조립 공정은 태국산 부품의 형상, 특성 및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며, 공정 자체도 비교적 단순하여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음

- ⊙ 최종제품에 본질을 부여하는 핵심 요소는 모터와 팬 블레이드이며, 이들은 전적으로 태국에서 생산되므로,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태국임

→ 무역구제조치 적용 및 원산지 표시 목적상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태국

IV 시사점

- ⊙ 본 사례의 경우, CBP는 송풍 및 환기를 위해 바람을 발생시키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모터 및 팬 블레이드를 주요 구성요소로 판단하여 해당 구성요소를 생산한 태국을 원산지로 판정하였으나, 각각의 구성요소가 다른 국가에서 생산되는 경우, 총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

CBP의 참고 판정 사례

물품명	박스형 선풍기
사례번호	NY N305760 (2019.09.10.)
쟁점사항	제301조 적용을 위한 원산지 판정
사실관계	• [중국] - 모터, 전기 스위치, 배선 하네스, 배선 캡 생산 • [베트남] - 사출성형 공정을 통해 전면 및 후면 그릴, 커버, 측면 패널, 팬 블레이드 생산 - 중국산 부품과 베트남산 부품을 최종조립하여 선풍기 생산
판정 결과	• 중국산 부품은 베트남에서의 공정을 통해 개별적 정체성을 상실하고 선풍기라는 새로운 명칭, 특성 및 용도를 갖는 상업적 제품으로 변형되므로,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베트남임

유의사항: 유사한 물품일지라도 사실관계(원재료, 제조공정 등) 및 최종 제품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원산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